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봅니다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봅니다



시민호민관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봅니다

시민호민관



발간사

안녕하세요. 제5대 시민호민관 백종은입니다.



2020년부터 우리를 괴롭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아픔을 겪어야 했으나 다행히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이 완화되는 등 국민생활이 일상을 회복해 가던 중, 팬데믹으로 과도하게 늘어난 통화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값 상승과 이로 인한 물가폭등으로 국민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경제가 더 어려워진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겪는 답답함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옴부즈만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 지방옴부즈만 설치근거가 법령에 규정된 이후,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70개의 지방옴부즈만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지방옴부즈만 제도가 확산 및 강화되고 있음은 당연한 현상인 듯합니다.

1989년 시로 승격한 우리 시흥시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향해 역동적으로 성장하여 57만 인구의 대도시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행정문제의 발생으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기초 지방정부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 나가면서 시민들의 삶을 보호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해진 행정환경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혼란과 현실에 바로 적응하지 못하는 법의 속성에서 오는 불만까지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통한 불복 절차를 모두 거치고도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호민관을 찾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행정현장에서 시민들의 억울함을 듣고,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시각으로 심사숙고하여 공행정을 감시·견제하며, 다수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상생의 해결방안을 찾도록 시민호민관 제도를 운영한지 어느덧 10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인 공행정과 독립성 유지와 시민의 눈높이 유지를 위해 시흥시는 상근독임제 호민관을 민간인 신분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모범사례로 타 지방자치단체 지방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사례로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시민호민관은 행정기관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 처분과 불합리한 제도 등에 의해 제기한 시민 권익침해 민원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표명이나 시정권고에 이르기 전에 호민회의 또는 부서협의를 통하여 조정·중재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민원인이 행정소송 등 사법구제 제도를 통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자체 시정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민호민관의 의견표명이나 시정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저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호민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게 감사면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조례에 명시하고, 적극행정 유공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호민관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흥시는 시민호민관 제도를 통하여 시민들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권익구제, 더 나아가 인권을 회복하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하며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시민호민관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표합니다.

2023. 2. 시흥시 시민호민관

백종은

PART
01

시민호민관 제도 소개

1. 시민호민관 도입 배경	08
2. 시민호민관 소개	08
3. 시민호민관 기능	09
4. 옴부즈만 제도 소개	11

PART
02

시민호민관 운영

1. 고충민원 처리 절차	14
2. 현장조사	15
3. 호민회의 운영	16
4. 시민자문단 구성 및 운영	17
5.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	19
6.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대외활동	20

PART
03

고충민원 운영성과

1. 총괄(2013년 ~ 2022년)	24
2. 2022년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25
3. 호민회의 주요 사례	26

PART
04

고충민원 주요사례

1. 고충민원 결정례	33
① 경제분야	34
② 복지·문화분야	42
③ 환경분야	50
④ 도시·교통분야	56
⑤ 농정분야	68

PART
05

참고자료

1. 보도자료	72
2. 연혁	74
3. 역대 시민호민관 약력	76
4.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78
5.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86





시민호민관 제도 소개

1. 시민호민관 도입 배경	08
2. 시민호민관 소개	08
3. 시민호민관 기능	09
4. 옴부즈만 제도 소개	11

01 시민호민관 제도 소개

1. 시민호민관 도입 배경

가. 시민의 대변자 『 호민관(護民官) 』



“고대 로마시대 평민의회에서 선출된 호민관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나.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이 법에 따라 잘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관료의 직권남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감찰하는 제도입니다.
- 옴부즈만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며, 언론을 통해 공표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다. 시흥시 시민호민관 제도

“시흥시는 그 어떤 곳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 수도권 서부 중심도시로써 급격한 외형적 성장과 함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시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과 불만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3년 3월부터 시민호민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봅니다.”

- 옴부즈만(Ombudsman)이라는 용어 대신 「시민호민관」을 선택한 이유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바라볼 때 비로소 시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의 소산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2. 시민호민관 소개

가. 백종은 시민호민관

- 신 분 : 위촉직 (민간인)
- 임 기 : 4년 (2021. 6. 14. ~ 2025. 6. 13.) * 연임 불가
- 근무형태 : 상근 독임제 ※ 개방형 직위 임용 4호 임기제 공무원 대우



나. 사무기구

- 업무범위 : 호민관 사무운영 및 고충민원 조사·처리 업무 보좌
- 인력구성

구 분	공무원				비고
	계	팀장	전문조사관 변호사	주무관	
인 원	3	1	1	1	

다. 시민호민관 사무실 (시흥시청 내)



3. 시민호민관 기능

가. 설치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기능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 처리



민원의 종결자(終結者) 역할 수행

- 01 민원상담 : 적절한 민원처리 절차 등의 안내 및 상담
- 02 갈등해소 : 상호 협의를 유도함으로써 시와 시민 간 갈등 해소
- 03 권익구제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부작위·불합리한 제도 등에 따른 시민 권익침해 민원 신속 처리
- 04 제도개선 :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다. 시민호민관 직무와 권한

- 시흥시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 부패 및 불공정 유발제도의 개선 요구를 위한 의견표명
-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 공표
- 반복적이고 고질적 민원 및 집단민원 조정·중재
- 시민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정책 수립·시행
- 시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 그 밖에 권익구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등

라. 고충민원 제외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시의회에 관한 사항
- 수사 및 감사 중이거나 이에 따라 종결 처분된 사항
- 판결, 재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

마. 일반민원 vs 고충민원

구분	일반민원	고충민원
법적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범위	·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4. 옴부즈만 제도 소개

가. 옴부즈만의 개념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 이란 의미로 시민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나.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행정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재량의 영역이 복잡·다양화되고, 그에 대한 민원 영역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옴부즈만이 민원인 당사자 또는 행정처리 담당자가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고 행정의 수용성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 옴부즈만의 기능, 특징과 효용성

· 옴부즈만의 기능

-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
옴부즈만은 주민의 신청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부당 여부를 검토하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하게 되므로 시민의 눈으로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
- 갈등조정 기능
옴부즈만은 행정기관과 주민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사법적 구제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에 대하여도 비용의 부담 없이 조사 및 조정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갈등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기능
- 행정개혁 기능
행정업무는 선례를 존중하는 속성이 있어, 시대의 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한 경우에도 관행이 변화되기 어려우나, 옴부즈만 활동을 통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관행이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

· 옴부즈만의 특징

- 옴부즈만은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진다.
- 옴부즈만은 행정,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 선임되므로, 그 처리 결과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
-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구제절차보다 간소하며, 민원인 입장에서 저비용의 해결 수단으로서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 옴부즈만의 효용성

- 옴부즈만은 행정업무에 대한 조예가 깊은 전문가가 시민의 시각에서 행정행위를 검토하여 위법·부당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옴부즈만이 내린 판단에 대하여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해당 행정기관의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옴부즈만 제도는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부당한 문제제기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 옴부즈만의 처리 권한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그치지만, 그 판단결과가 민원인과 해당 기관에게 통보될 뿐만 아니라 연간 운영상황의 형태로 의회 및 시장에게 보고되므로, 행정기관에서는 처음 처리 단계부터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 신중한 업무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민원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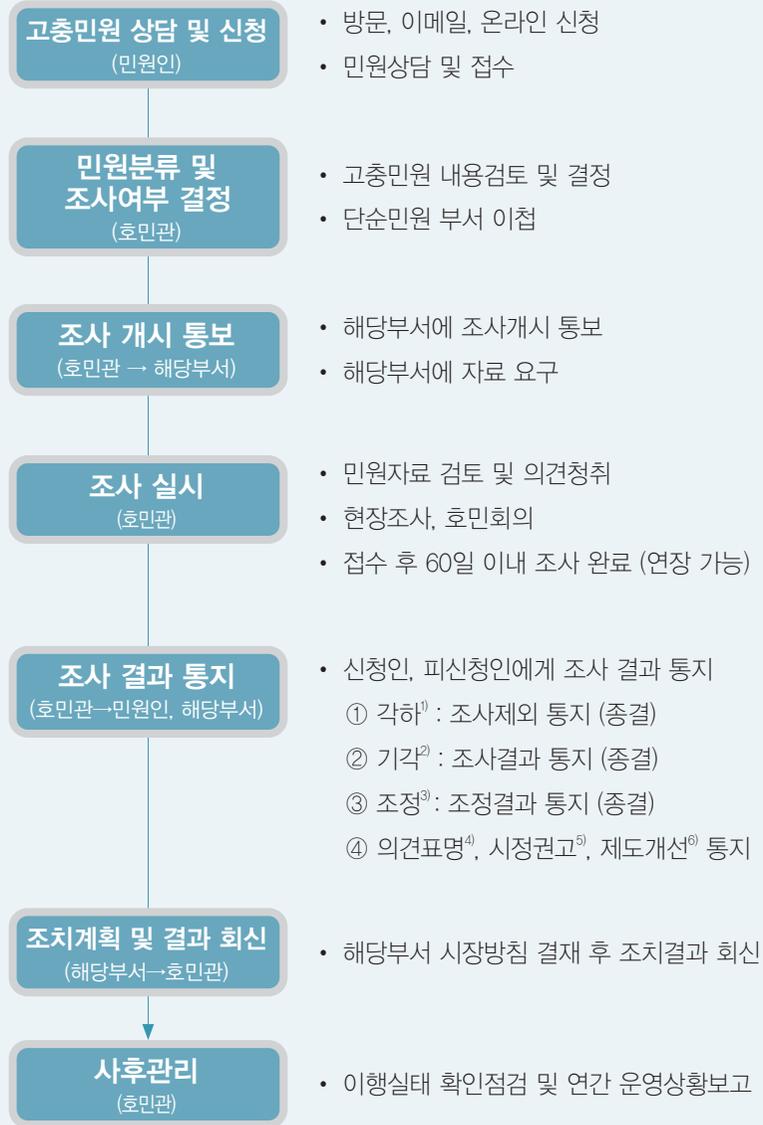


시민호민관 운영

1. 고충민원 처리 절차	14
2. 현장조사	15
3. 호민회의 운영	16
4. 시민자문단 구성 및 운영	17
5.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	19
6.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대외활동	20

02 시민호민관 운영

1. 고충민원 처리 절차



1) 각 하 : 사실관계 검토 결과,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사를 제외하는 경우
 2) 기 각 : 조사 결과, 제기된 민원의 타당성이 없거나 구제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조 정 : 조사 결과, 호민관의 의견표명 또는 시정권고 이전에 호민관의 중재에 따라 해결되는 경우
 4) 의견표명 :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시정권고 :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6) 제도개선 :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현장조사

고충민원 현장 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과 행정여건 등 정책적 요소를 고려한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권익구제

가. 추진방향

- 고충민원 조사·처리 과정에 현장조사 기능 필수화
- 중점 현장조사 분야 선정·관리
 -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 지역주민 다수의 고충민원,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공사, 민원현장에서 조정이 필요한 민원 등

나. 추진현황



초지법에 따른 직권 지목변경 요청 민원 현장



도로편입 옹벽 보상 요청에 따른 토지 경계측량



토양정밀조사 명령 관련 민원인 면담



개발제한구역 내 지하수 개발 요청 민원 현장

3. 호민회의 운영

고충민원 이해관계인과 함께 민원의 원인과 내용, 양측의 주장과 판단근거를 공유·토론함으로써 상호이해를 통한 갈등 해소와 조정·중재의 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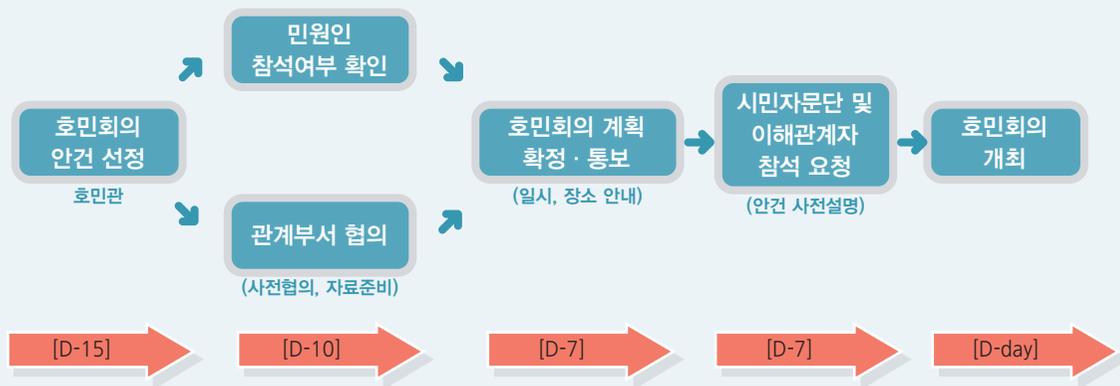
가. 추진방향

- 호민관 주재 하에 민원인과 관계부서 간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고충민원 해결에 필요한 판단요소 명료화 → **민원처리 효율성 제고**
- 민원인과 관계부서 간 상호이해와 호민관의 합리적인 중재를 통해 원만한 고충 해결방안 모색 → **고질·반복민원의 적극적 해결**
- 고충민원과 관련한 부서 합동회의를 통해 부서 간 칸막이 해소 → **복합민원의 효과적 대응**

나. 운영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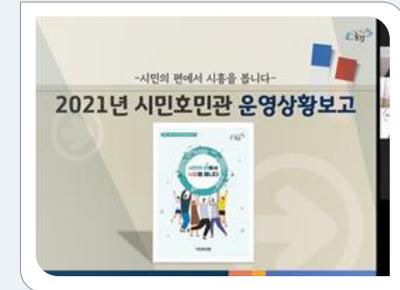
- 운영주기 : 수시(고충민원 사안별 판단)
- 참석대상 : 시민호민관, 시민자문단 및 이해관계자①, 민원인, 관계부서② 등
 - ① 고충민원 안건에 따라 관계분야 전문가 2~4인 구성
 - ② 관계부서는 부서장, 팀장, 담당자 참석
- 회의안건
 - 1) 고충민원에 대해 민원인 주장과 관계부서의 입장이 상이한 경우
 - 2) 다수의 부서 및 기관이 연계된 복합민원
 - 3) 호민회의를 통해 조정·중재가 가능한 사안
 - 4) 기타 호민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다. 세부 운영절차



4. 시민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고충민원 처리 등 호민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시민자문단 구성 및 운영



가. 운영근거

-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나. 운영개요

- 구 성 : 총 20명
 - 행정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호민관이 위촉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역 할
 - 고충민원 중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자문
 - 운영상황보고서(안) 검토
 - 호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 등
- 운 영
 - 자문단 회의는 연 2회 개최 (단장이 필요로 할 경우 수시 개최 가능)
 -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문위원에게 자문 요청

나. 구성현황 : 20명 (남 12명, 여 8명)

계	자격 및 분야											
	시 민 호민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인권 보호관	건축사	기술사	안전	환경	아동	언론	시민 단체
20	1	5	2	2	1	1	1	1	2	2	1	1

시민자문단

성명	직위	직업/경력	분야
백종은	자문단장	시흥시 제5대 시민호민관	
이상기	위원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대표	시민단체
임용관	위원	(주)에승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기술사
최영길	위원	(주)아띠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정중호	위원	법무법인 태일	세무사
차선화	위원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센터장	복지
제아름	위원	법무법인 유례	변호사
이건희	위원	이건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변호사
김문진	위원	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환경
장범수	위원	국토안전관리원 수석전문위원	안전
이은수	위원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장연화	위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박향석	위원	법무사 박향석사무소	법무사
서성민	위원	서성민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금섭	위원	장금섭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마미자	위원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아동
이선미	위원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복지
서정우	위원	서정우 법무사	법무사
김신섭	위원	인천일보 기자	언론
조진희	위원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동

5.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권리구제 및 생활분쟁 해소

가. 운영근거 : 「시흥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운영개요

- 구 성 : 총 17명
 - 변호사(6명) : 김병현, 이일용, 임종문, 장세윤, 조성제, 법무법인 해마루
 - 법무사(8명) : 김대우, 박원배, 박향석, 서정우, 송진호, 위 연, 이군성, 장문석
 - 세무사(3명) : 김용진, 서지호, 한상윤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현 법률상담관 위촉기간 : 2022. 2. 1. ~ 2024. 1. 31.
- 상담장소 :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시민호민관 내)
- 상담분야
 -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에 관한 사항

다. 운영일정

구분	운영시간	법률상담관	비고
월	오전	10:00 ~ 12:00	생활법률 상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부동산, 파산 등)
	오후	14:00 ~ 16:00	
화	오후	14:00 ~ 16:00	
수	오전	10:00 ~ 12:00	

라. 운영실적

계	성 별		유 형				
	남	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복합
329	140	189	194	24	52	48	11

6.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대외활동

국내 옴부즈만 운영기관 간 교류와 협력 촉진,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의 역할 정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국 지방옴부즈만협의회 활동 및 지자체 방문 컨설팅 등

가. 경기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 및 세미나 참석

- 일시·장소 : 2022. 9. 2. (금) /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 참석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담당자 등 50명
- 주요내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현장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
 - 우수 민원 처리 사례 및 주요 홍보·상담·조사활동 사례 공유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제도에 관한 의견 및 애로 사항 등 수렴



나. 제4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022. 12. 15. (목) /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E타워
- 참석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 70명
- 주요내용
 -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관련 정책 추진상황 설명
 - 시민고충처리위 정책·제도에 관한 의견 및 애로 사항 수렴 등

다. 타 지자체 시민호민관실 방문기관(벤치마킹)

- 방문기관 : 경기도 오산시청
- 일 시 : 2022. 7. 26.(화)

- 방 문 자 :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장 및 담당 주무관
- 주요내용
 - 옴부즈만 및 지원인력 운영
 - 예산편성 및 사무실 공간 구성
 - 민원처리 절차 및 홍보 등



03



고충민원 운영성과

1. 총괄(2013년 ~ 2022년)	24
2. 2022년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25
3. 호민회의 주요 사례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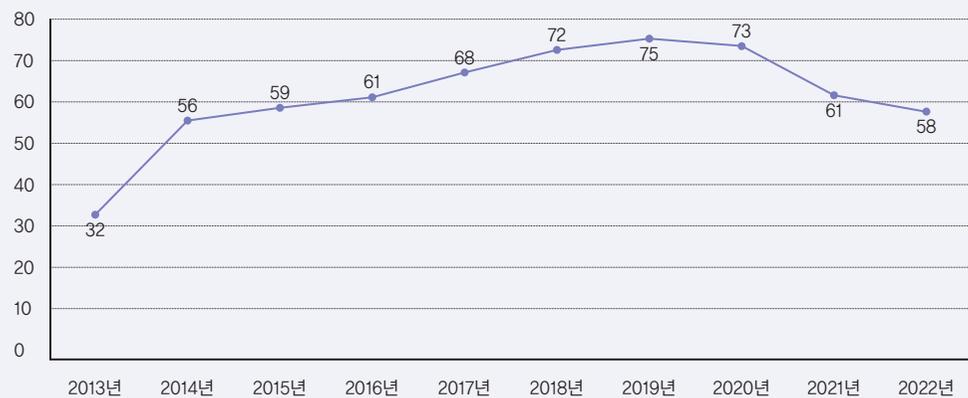
03 고충민원 운영성과

1. 총괄 (2013년~2022년)

구분	고충민원 접수 처리 현황								제도개선	기타 안내
	계	조사중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중재	기각	각하	취하		
계	615	3	41	55	324	93	61	34	40	1,910
2013년	32	-	0	12	6	11	3	0	5	140
2014년	56	-	11	11	16	7	9	2	3	124
2015년	59	-	14	5	26	6	7	1	4	174
2016년	61	-	5	9	22	16	6	3	7	187
2017년	68	-	0	5	38	8	6	7	5	201
2018년	72	-	1	5	34	15	11	6	6	212
2019년	75	-	2	3	63	1	2	4	1	215
2020년	73	-	4	0	62	0	2	5	5	207
2021년	61	-	2	0	31	12	14	2	3	191
2022년	58	3	2	5	26 (기타 9)*	17	1	4	1	259

* 기타 :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민호민관이 개입하여 조정·중재(사실확인, 직소민원 이첩 등)

연도별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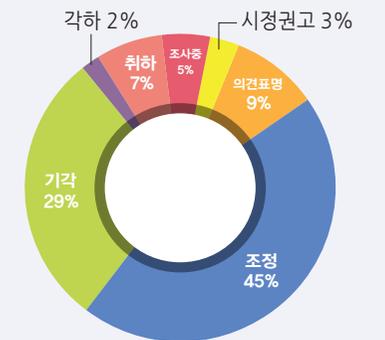
• 시민호민관 출범 첫해인 2013년 32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14년 56건, 2015년 59건, 2016년 61건, 2017년 68건, 2018년 72건, 2019년 75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20년 코로나 19 이후부터 최근 3년간 고충민원 처리 현황은 2020년 73건, 2021년 61건, 2022년 58건으로 연 평균 약 61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함

2. 2022년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① 고충민원 처리현황

구분	계	조사중	시정권고			조정 중재 (수용)	기각	각하	취하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부서 검토중				
2022년	58	3	5	-	2	26	17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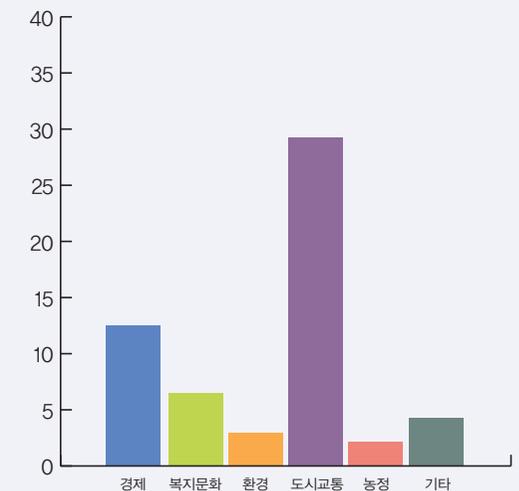
- 2022년에는 총 58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시정권고 2건, 의견표명 5건, 조정·중재 26건으로 총 33건의 고충민원을 시민의 편에서 해결함
- 시민호민관의 33건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중재안 중 31건을 부서에서 받아들여, 호민관 의견에 대한 부서 수용률이 94%로 매우 높음(※ 2건은 부서에서 수용 여부에 대하여 검토중)



② 분야별 고충민원 현황

계	경제	복지문화	환경	도시교통	농정	기타
58	13	7	3	29	2	4

- 분야별로는 도시교통 분야가 29건(5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경제 분야 13건(22%), 복지문화 분야 7건(13%), 기타 4건(7%), 환경 3건(5%), 농정 2건(3%) 순임



3. 호민회의 주요 사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은 부당

[2차 호민회의 : 2022. 3. 22.(화)]

- 신청인은 1977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 필지(○○동 000, 답 4,736㎡, 000 경지정리지역)에서 논농사를 영위하여 왔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경기도의 「경기미 쌀 적정생산 대책」 지침에 의해 논농사보다 수익 창출이 용이한 대체작물 경작을 권유하여, 2012년부터 해당 필지를 받으로 변경하여 토마토 농사를 지어오고 있었는데, 2020. 9월에 건축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2022.12월 한)을 받았으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3억원을 부과 한다고 함.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밭농사를 권장하면서, 건축과에서는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며, 인근지역 중 000에 대하여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공정함. 올해까지만 밭농사 경작 후 내년(23년)부터 논으로 원상복구 할 계획이니, 하우스 철거비용이라도 시에서 지원해 주기를 요청함
- 시에서 불법사항에 대하여 철거비용 등 원상복구를 위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000 원상복구 명령은 총 350건으로 원상회복 등 일부를 제외하고 242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000 관련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기획부동산 임대 관련 6필지는 000 경지정리지역 처분 관련 법원 조정문대로 2023. 5. 31.까지, 나머지 필지는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 재배 시범사업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기간을 고려하여 원상복구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함

코로나 방역지침 관련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동의기준 소급 적용

[4차 호민회의 : 2022. 6. 8.(수)]

- 신청인은 OO지구 내 집합건물을 임대하여 용도변경(판매시설→운동시설) 후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2022. 2. 7.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주차 법정대수)의 경우 당시 코로나 방역지침에 의거, 서면방법에 의하더라도 구분소유자 2/3 이상 및 의결권의 2/3 이상 결의(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공문 회신 받음
- 신청인은 4개월에 걸쳐 구분소유자 2/3 이상 및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2022. 6. 피신청인에게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서면동 의는 구분소유자 4/5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려했으며, 이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함
- 신청인은 코로나 상황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에게 정식으로 서면 질의할 것을 권유하며, 피신청인은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민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 회신 및 적극행정의 자세를 갖추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함

개발제한구역 내 지하수 개발 요청(1차)

[7차 호민회의 : 2022. 7. 14.(목)]

- 신청인은 2013년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허가를 득하고 2021년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현재 내부 마감공사를 하고 있으며, 생활용수 및 농사, 조경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과에 용수개발을 신청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은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니 상수도를 연결하라고 함. 1km이상 떨어진 기존 상수관에서 1세대가 사용하기 위하여 상수도를 연결할 경우 많은 공사비가 발생되어, 지하수 개발을 허용해 달라 요청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2, 바에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는 안 되는데, 허가 당시 상수도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협의를 해준 것인지 확인 필요하며, 형식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건축허가가 나갔다면 시에서도 잘못이 있는 바 지하수개발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개발제한구역 내 지하수 개발 요청(2차)

[10차 호민회의 : 2022. 9. 15(목)]

- 2013년 건축허가 신청시, 시에서는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었으면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데(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2. 바목), 허가기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승인함
- 2020년 건축허가 변경신청시,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주변에 연결할 수 있는 상수도가 없음에도 설계 도면에 '시 상수도 본관에 연결'이라 표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시에서는 상수도 미설치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인 조건부 허가(상수도 인입 시 ~ 상수관로 위치 확인 후 계량기 위치, 구경, 인입지점 등 별도 협의 완료 후 진행할 것)로 회신하였음
- 승마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1] 5. 아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로, 체육시설업의 경우 급수시설이 필수시설로 되어 있음(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 관련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용수 목적의 지하수개발은 불가하나, 시의 허가사항을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준공 직전까지 공사를 진행한 신청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최소한의 지하수개발을 허용해 줄 수 있도록 의견 표명 함

사유지 현황도로 보상금액 확인 및 무단 포장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13차 호민회의 : 22. 11. 10. (목)]

- 시에서 신청인이 소유한 ◎◎동 산〇〇번지(임야) 일부에 신청인의 동의 없이 비포장 상태였던 현황도로를 포장하고 울타리를 설치하였기에 원상복구를 원하며, 원상복구 불가시 적절한 보상을 요청함
- 해당 토지는 □□□□□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로 수용·편입될 예정인데, 보상 시 시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하기 전인 비포장 상태로 감정평가 하도록 하고, 인근 잔여지에 대하여도 신청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상 진행할 것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예고에 대한 중단 요청

[15차 호민회의 : 22. 12. 7. (수)]

- 신청인은 시흥시 ◎◎동 □□□□□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으로 시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으로 과태료 2,000만원(입주자대표 1,000만원, 관리사무소 1,000만원) 부과 예정 통보를 받음
- 신청인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시설물 관리프로그램(장기수선계획 관리프로그램 포함) 비용을 일반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하다는 민원사례를 참고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일반관리비로 지출하였는데, 위반내용에 비해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신청인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람
- 신청인은 업체에서 제시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유사사례에 대하여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사안을 의결하여 계약체결 및 비용 집행한 과실이 있으나, 이미 집행한 총 사용료 5개월분인 170,500원 금액의 규모(세대별 약 516원 관리비 부과)에 비하여 과태료 2,000만원은 과도하므로, 신청인 측에서 업체와 계약해지 및 잘못 부과된 관리비를 입주민들에게 환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아직 진행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절차를 중단할 것을 조정 제시함





고충민원 주요사례

1. 고충민원 결정례	33
① 경제분야	34
1. [시정권고] 개별공시지가 폭등에 대한 적법 여부 확인 요청	
2. [의견표명]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정차 과태료 취소 요청	
3. [조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시정권고 요청	
4. [조정] 이행강제금 분할납부와 통장 압류 해제 요청	
② 복지·문화분야	42
1. [각하-제도개선]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요청	
2. [의견표명] 투석환자 병원차량 이용 요청	
③ 환경분야	50
1. [시정권고] 토양정밀조사 명령 이행 의무 부과 등 부당	
④ 도시·교통분야	56
1. [의견표명] 개발제한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용	
2. [조정]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부당	
3. [조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부당	
4. [조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취소 요청	
5. [조정] 사유지 현황도로 보상금액 확인 및 무단 포장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⑤ 농정분야	68
1. [조정] 경지정리지역 원상회복 이행 부당	

고충민원 주요사례



고충민원 결정례

① 경제분야

1. [시정권고] 개별공시지가 폭등에 대한 적법 여부 확인 요청
2. [의견표명]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정차 과태료 취소 요청
3. [조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시정권고 요청
4. [조정] 이행강제금 분할납부와 통장 압류 해제 요청



1-1

개별공시지가 폭등에 대한 적법 여부 확인 요청 - 시정권고

1. 고충민원 개요

- 신청인 소유의 ◎◎동 000번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배 이상 폭등(2020년 3만원 → 2022년 60만원)해서 그에 따른 재산세도 폭등함(2020년 350만원 → 2022년 2,700만원)
- 1-2년 사이에 갑자기 개별공시지가가 폭등한 이유와 근거법령 등에 대한 확인 및 위법하다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처리 결과

- 신청인의 토지인 ◎◎동 000번지(임야)는 2/3 이상이 임야이고, 1/3이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2020년 인근 ◎◎동 ●●●번지(대)와 일단지*로 보아 2021년부터 ◎◎동 ●●●번지와 동일한 표준지로 산정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1-2년 사이에 20배 이상 폭등하여 재산세 등 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 피신청인에게 2023년 개별공시지가 선정 시 ◎◎동 000번지와 관련하여 임야 부분과 대지 비율 각각에 맞는 공시지가 산정 내지 표준지를 재선정하여 적정한 공시지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며,
- 신청인과 같이 짧은 기간에 개별공시지가가 10배 이상 폭등한 경우에는 시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할 것을 권고함.

2022. 12. 23.

*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해당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1-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주정차 과태료 취소 요청 - 의견표명

1. 고충민원 개요

- 신청인은 0000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전기차충전구역을 주식회사 □□□과 계약하여 설치공사를 시작하였고, 부족한 주차난으로 인하여 설치중인 충전구역에 아파트 주민들이 일반차량을 주차하다 입주민에게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됨. 관리사무소에서는 업체로부터 26일부터 충전구역을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입주민에게도 26일부터 사용안내를 공고하였기에 그 이전에 적발되어 부과된 주민들의 과태료를 취소 요청함

2. 처리 결과

- 0000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2. 7월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설치 업체로부터 “7월 26일부터 전기차 충전기 사용 가능 안내” 회신을 받은 후 이를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하였으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위반차량의 단속시점은 전기차 충전 사용계시일인 26일 이전(23일~25일)에 일어난 행위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내하기 이전이며,
- 시에서 22. 11. 21. 신청인에게 발송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의2호가 미기재 되어 있음
- 위와 같이 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바, 시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6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취소하고,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1인에 대하여는 환급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함.

2022. 12. 26.

1-3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시정권고 요청 - 조정



1. 고충민원 개요

- 신청인은 OO OOO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으로 시설물 관리프로그램(장기수선충당금 포함) 비용을 일반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하다는 민원사례를 참고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일반관리비인 도서인쇄비로 지출함(도서인쇄비 : 현 거주자 부담 / 장기수선충당금 : 실 소유자 부담)
- 업체와 계약하여 5개월을 지출(월 34,100원)하였는데, 집행이 잘못 되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각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너무 과하니, 과태료 부과 절차 전 시정명령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함

2. 처리 결과

- 신청인은 2022. 6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시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장기수선계획 관리 전문 업체를 선정 의결하고, 2022. 7. 8. (주)ㅇㅇㅇ엔터프라이즈 및 (주)아파트△△와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이하 'AFMS'라 함) 서비스 이용 관련 3년 계약(매월 25일 34,100원 자동이체 지급)을 체결함
- 그러나 신청인은 해당 아파트 세대 거주자들에게 위 '장기수선충당금 시스템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을 위반(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시에서는 2022. 11. 30. 신청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함
- 신청인의 경우,
 - 관리사무소장이 2022. 4월에 새로 교체되면서 인수인계 미비 및 자료 관리의 비일관성으로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현실적 한계가 있는 바,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자 자재·공구관리, 공사관리, 민원관리, 문서관리 등 관련정보를 저장 및 보관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시스템 사용을 검토하였고 추가로 장기수선계획서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기에 해당 시스템 운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점
 - 신청인에게 장기수선계획만을 위한 전문 관리업체 선정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과실은 인정되나, 의결 과정에서 AFMS 사용 계약으로 인해 부수적인 시설물관리 등 2개의 시스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의결 시 반영 되었던 점

- 해당 AFMS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은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국토교통부의 2020. 11. 11. 'AFMS 사용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규약준칙 및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상 비용 지출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계정항목 중 일반관리비 제사무비 중 도서인쇄비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질의·회신 자료를 참고하였고, 시흥시 관내의 많은 단지에서도 신청인과 같이 시스템 사용 비용을 도서인쇄비로 처리하고 관리비로 부과하는 관행이 있는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있음
- 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일련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법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22. 12월 말 기준 총 사용료 170,500원 금액의 규모(세대별 약 516원 관리비 부과)에 비하여 과태료 2,000만원(입주자대표회의 1,000만원, 관리업체 1,000만원)은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신청인은 위 과실을 바로잡고자 2022. 12. 12. 해당 AFMS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여 환금을 받았으며, 기부과된 관리비를 다음달 고지서에 환급하기로 하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시정 노력을 보임
- 현재 시에서는 2022. 11. 30. 신청인에게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통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진행 예정'만 안내된 경우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바, 위 사유들과 더불어 과태료 부과 예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조정결정함.

2022. 12. 16.



1-4

이행강제금 분할납부와 통장 압류 해제 요청 - 조정

1. 고충민원 개요

- 신청인은 ◎◎동 000번지 건물 소유자의 배우자로 시로부터 2010년 하반기 수임점검¹⁾ 시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2011. 2. 14. 약 6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체납되어 매월 10~30만원을 수납부 중이었음
- 2020년 7월 시 담당자가 바뀌면서 남아있는 약 4천만원의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라고 하여, 건물을 처분하여 납부하려 하였으나 건물이 팔리지 않아, 시로부터 차량이 공매되고 건물 세입자의 보증금이 들어있는 통장이 예금압류까지 됨
- 통장압류가 해제되어야 건물이 팔릴 때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및 건물 관리비용을 처리할 수 있으니, 압류된 통장의 해제를 요청함

2. 처리 결과

- 신청인의 배우자(체납자)는 2011. 4. 20. ~ 2020. 4. 24. 이행강제금 59,742,320원 중 19,482,320원을 납부하고 그 외 금액(40,260,000원)을 체납함
- 피신청인은 2020. 4. 24. 이후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몇 차례 유예하였으나, 2022. 7. 8. 체납자 소유의 압류자동차 공매를 통지하고 매각대금 9,446,500원을 체납액에 충당하여 현재 이행강제금 30,813,500원이 남음
- 피신청인은 2022. 9. 27. 체납자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 및 위 토지를 압류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또한 압류 해제는 채권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바, 현재 체납된 금액 중 1,500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은 앞으로 1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납자의 농협 은행 계좌 압류를 해제하고자 함
- 이에 피신청인도 동의하여 조정 결정함

2022. 12. 16.



1) 수임점검: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 사용승인된 수임사무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

고충민원 주요사례



고충민원 결정례

② 복지·문화분야

1. [각하-제도개선]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요청
2. [의견표명] 투석환자 병원차량 이용 요청

2-1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요청 - 제도개선 (각하)



1. 고충 개요

가. 신청요지

- 신청인은 법무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재단법인)으로, 정관변경 허가 요청을 주무관청인 법무부에 하였고, 법무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인 피신청인과 협의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시흥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고, 신청인은 법무부에서 정관변경 불허 처분을 받음
- 신청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임에도 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이 법무부의 정관변경 허가 협의에 응하여 줄 것을 요청함.

나. 당사자

- 신청인 : (재)코리아 O O O
- 피신청인 : 시흥시장(보건정책과장)
- 관계인 : 법무부

2. 결정

가. 주문

- 피신청인은 「시흥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의료법인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기준' 외에 '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개선 절차를 이행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나. 이유

- 불임과 같다.

〈불 임〉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신청인은 법무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으로, 시흥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주무관청인 법무부에 정관 변경 허가 요청을 하였고, 법무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피신청인과 협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시흥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함)을 적용하여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관변경이 불허되었다.
- 비영리법인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부당하고, 피신청인은 법무부의 정관변경 허가 협의 요청에 협조하여 달라.
-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타 재단법인 등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미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고려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 2017. 4. 6. 이후부터 모든 법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 변경허가 협의 시에 이 사건 기준을 일괄적으로 준용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 인가 주무부서에서 피신청인의 협의 없이 정관이 승인되므로 이 사건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 시흥시 관내에 다른 재단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 제9항 신설 이전인 2003년에 개설되어 정관변경 협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2016. 9. 30.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된 이후 재단법인에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없다.

2. 관계법령 등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제3항·제9항, 제36조, 부칙<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 「의료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제20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4조 및 [별표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6호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 「시흥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 보건복지부 「202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3. 이 사건의 판단

가. 민원경위

- 신청인은 2014년 ‘대표이사 000, 외국인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상담, 국제의료 지원 활동, 외국인 긴급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설립 등의 사업내용’으로 주무관청인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을 설립 및 등기하였다.
- 신청인은 주무관청인 법무부에 시흥시 ◎◎동 000번지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2021. 8. 31. 신청인에게 정관 변경 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 관련 규정, 「의료법」 및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함)에 의거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의료기관 개설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협의할 것과 기타 신청인의 기존 정관에 필수 기재 사항 누락 부분의 수정 필요성 등을 안내하였다.
- 법무부는 2021. 10. 15.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정관 변경 협의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21. 10. 20. 법무부에 ‘보건복지부의 비영리법인 등 의료기관 개설허가 관련 개설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 정관개정 허가를 지양하라는 알림 및 이 사건 기준에 부적합’을 이유로 협의 불가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이에 법무부는 2021. 10. 21. 신청인에게 정관 변경 불허를 통보하였다.
- 신청인은 2021. 10. 26. 피신청인에 이의신청, 2021. 10. 27. 법무부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진정을 각각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2021. 11. 29. 신청인과 법무부에 ‘외부 법률자문 결과 및 각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회신하여, 법무부는 2021. 12. 2. 신청인에게 정관 변경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불가 결정을 하였다.

나. 신청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 변경 절차

- 비영리법인인 신청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신청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 「의료법」의 목적

- 「의료법」의 입법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있다.
- 2015. 12. 29.에 신설되고, 2016. 9. 30.부터 시행된 「의료법」 제33조 제9항의 취지는 1) 법인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주무관청에서 일차적으로 정관 변경 허가 심사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설립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설립가능성을 확인하고, 2) 의료기관 개설 예정지 관청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개설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운영계획서 등이 상호 확인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3) 법인이 편법으로 의원을 개설하여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며 부당청구·허위청구 하는 경우와 법인이 의원급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그와 관련된 부작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실정에서 무분별하게 정관 변경을 거치지 않고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형태로 여러 군데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하는 것을 막고, 4) 원칙적으

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신고 사항인데, 정관 변경 절차상 의료기관 개설 소재지를 기재하여 허가 받도록 하여 그 단계에서 의료기관이 소재할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하여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다고 보아 개정하게 된 것이다(법제처 15-0805, 2016. 6. 13. 및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 개정된 의료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에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개설 전 정관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 또한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운영 능력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법제처 21-0307, 2021. 9. 14.).

라. 이 사건 기준의 개정 필요성

- 이 사건 기준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 사건 고시 등을 구체화하고 내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 지침으로, 위 기준을 마련 및 적용하도록 법령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의료법인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모두 법인이라는 점,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법인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료법인의 개설 및 운영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이므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의료법」 제33조 제9항 및 이 사건 기준 등에서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의료법인 등’이라 하여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 변경 허가 내용을 같이 규정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3장(의료기관) 중 제33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의료법인(제3호)을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및 준정부기관 등(제5호)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이 중 의료법인에 적용되는 설립허가(제48조), 의료법인의 임원(제48조의2),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제49조),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제51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절(節)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제2절).
- 또한 「의료법」 제36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3]에서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의원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2020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180쪽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에 의료기관 개설권을 허가한 취지(의료취약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촉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공급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최소 기본재산, 법인이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 등을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법인 설립 및 기본재산 처분 허가 등의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법인 설립예정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이 사건 기준은 ‘의료법인’ 설립 허가 절차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규모에 대한 기준이 있을 뿐, 신청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공백이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향후 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관련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초래될 혼란을 방지하고, 어떤 기준에 의하여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 시민호민관은 사실관계 확인 및 현황 조사, 법령 해석 검토, 신청인과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주장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바, 공정한 행정구현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2. 18.



2-2

투석환자 병원차량 이용 요청 - 의견표명

1. 고충민원 개요

- 혈액투석을 위해 병원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차량운행이 환자유치행위라 하여 민원신고 되어 중지됨. 환자의 경우 투석을 하기 위해 택시, 희망네바퀴 차량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투석 예약 시간도 맞추기 어려움. 차량이 없을시 투석환자의 경우 죽으라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를 요청

2. 처리결과

- 거동이 불편한 투석환자들이 예약 후 해당 병원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투석치료 하는 경우를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본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법을 해석한 것으로,
- 이미 김포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전승인 기준을 마련하여 투석환자들에게 차량제공 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 투석환자들이 엄동설한에 불편한 몸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적극 행정을 펼쳐 사전승인 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권고함.

2022. 12. 21.

고충민원 주요사례



고충민원 결정례

③ 환경분야

1. [시정권고] 토양정밀조사
명령 이행 의무 부과 등 부당

3-1

토양정밀조사 명령 이행 의무 부과 등 부당 - 시정권고



1. 고충 개요

가. 신청요지

-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 ◎◎동 000 외 1필지를 소유하고 위 토지에서 자동차 정비업체인 '시흥□□□(주)'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피신청인이 위 번지를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곳으로써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이에 대한 토양정밀 조사명령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였으나, 다시 토양정밀조사재명령을 받음
- 신청인은 위 번지 중 피신청인이 과거 토지구획정리를 진행하며 성토한 곳에서 생활 폐기물이 나왔고 이에 신청인은 자신이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아니며, 원인 제공자인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양정밀조사재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함

나. 당사자

- 신청인 : 000
- 피신청인 : 시흥시장(환경정책과장)

2. 결정

가. 주문

- 피신청인이 2022. 1. 5. 신청인에게 한 토양정밀조사재명령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이유

- 붙임과 같다.

〈붙임〉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신청인은 현재 경기도 시흥시 ◎◎동 000-A, 000-B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자동차 정비업체인 시흥□□□(주)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토지는 과거 피신청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피신청인이 성토한 지번을 파보니 생활 폐기물이 나왔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토양정밀조사재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내린바,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명령을 취소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 사건 명령 이행 후 그 비용이 과도하다면 전(前)소유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
-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토양정밀 조사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하는 것도 고려 중이나, 신청인이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라면 이 사건 명령을 취소할 의향도 있다.

2. 관계법령 등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8조, 제10조의4,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호, 제32조 제2항 제2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9조, 제9조의2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및 [별표3], 제3조
-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
- 「행정기본법」 제18조

3. 이 사건의 판단

가. 민원경위

-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민원경위는 다음과 같다.
 - 1987. 11. 4. ◎◎동 ★★ 답 1,060㎡(이 사건 토지 환지 전) 신청인 전(前) 소유자 △△△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 1990. 10. 12. 건설부 고시 제658호 사업계획결정

- 1992. 3. 26. 경기도 공고 제125호 ◎◎ 제☆지구(제◇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처리
- 2002. 9. 13. 시흥시 공고 제2002-322호 공사완료 공고
- 2002. 11. 4. 시흥시 공고 제2002-380호 환지확정처분 공고
- 2002. 11. 21. ◎◎동 ★★번지 → ◎◎동 000-A, 000-B, 000-C번지로 분할
- 2002. 11. 28. ◎◎동 000-B, 000-C번지 피신청인 소유권보존등기 경로
- 2003. 1. 21. ◎◎동 000-B, 000-C번지 신청인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 2003. 11. 25. ◎◎동 000-A번지 신청인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 2009. 12. 7. ◎◎동 000-B, 000-C번지 합병(000-C번지 말소)
- 2019. 12. 6. 경기도 → 피신청인 / 2020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예정지 선정 제출 요청
- 2020. 1. 14. 2020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예정지 선정 및 제출
- 2020. 4. 22. 토양오염실태조사 진행
- 2020. 12. 15. 2020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정밀조사 명령
- 2021. 겨울 신청인이 개별적으로 ◎◎동 000-B번지를 굴토(掘土)시 하여보니 생활 폐기물 나옴
- 2021. 12. 16. 토양정밀 조사명령 불이행 사실 확인
- 2022. 1. 4. 신청인 과태료 납부 완료
- 2022. 1. 5. 피신청인 → 신청인 / 2020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이 사건 명령

나. 시민호민관의 제안

- 시민호민관은 2022. 3. 18., 6. 3. 이 사건 토지에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과 대화하며, 여러 차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협의하였다.
- 2020. 4. 22. 당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곳이 이 사건 토지 000-A번지와 000-B번지 사이에 걸쳐 있는 곳으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정비업체 입구 부근이었다. 또한, 신청인이 2021년 겨울 즈음 000-B번지를 상수도 설비를 고치기 위하여 땅을 파다가 생활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시민호민관은 신청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000-A번지와 피신청인으로부터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는 000-B번지에 각각 3곳 정도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비교할 것을 제안하였고, 2022. 4. 26. 이 사건 토지 각각에 토양오염도 시료 채취를 실시한 결과인 2022. 5.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중 피신청인이 토지구획정리 사업 중 성토하였다는 000-B번지에서만 아연 항목이 기준치가 초과된 것이 확인되었다.

다. 관련 법령 검토

- 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 법 제4조의2,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및 [별표3]이 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 등은 그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으며(법 제6조 제4항 제2호), 해당 지역의 정확책임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9조).
- 이 사건 토지는 중점오염원 지역 중 교통관련시설지역으로 정비소 등에 해당하고,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별표3]의 3지역에 해당하여 환경부의 2020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추진 중 피신청인이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후 2020. 1. 14. 토양오염실태조사 예정지 10개소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로 보아 정확책임자로 토양정밀 조사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나,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할 2003년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확책임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라. 「행정기본법」 제18조

- 협의의 행정행위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성립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행정행위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직권취소 대상은 모든 행정행위로서 부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및 제3자효 행정행위를 포함하며, 취소 사유는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도 포함된다.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5. 6. 9. 선고, 95누1194 판결 등), 법치행정의 원리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 2022. 5. 토양시료 분석 결과, 피신청인이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중 성토한 토지에서만 오염 기준치가 초과되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 토양오염 원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2022. 1. 5. 신청인에게 한 이 사건 명령은 부당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결론

- 시민호민관은 사실관계 및 현장 확인, 관련법령 조사, 신청인과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주장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바, 공정한 행정구현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24.

고충민원 주요사례



고충민원 결정례

④ 도시·교통분야

1. [의견표명] 개발제한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용
2. [조정]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부당
3. [조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부당
4. [조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취소 요청
5. [조정] 사유지 현황도로 보상금액 확인 및 무단 포장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4-1

개발제한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용 - 의견표명



1. 고충민원 개요

가. 신청요지

-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 ◎◎동 000번지에서 2013년 승마장 건축허가를 득하고 2020. 12. 1. 건축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여 2021. 2. 10. 허가받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주로, 실외체육시설인 승마장 준공을 위하여 급수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나,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상수도를 설치하려면 1km 가량 떨어진 곳에서부터 연결해야 하고 그로 인한 비용이 과다하므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을 허가하여 달라고 요청함

나. 당사자

- 신청인 : 000
- 피신청인 : 시흥시장(건축과장, 생태하천과장)

2. 결정

가.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경기도 시흥시 ◎◎동 000번지 (목장용지 1,392㎡)에 건축 중인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의 필수시설인 급수시설을 갖추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나. 이유

- 붙임과 같다.

〈붙임〉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 ◎◎동 000번지 목장용지 1,3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4. 10. - 2020. 7.까지 소유했던 자이고, 현재는 건축주로, 2013년 운동시설(운동장(마사)) (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 건축 허가를 받았고, 2020년 위 허가사항을 변경 신청 후 처리되어 이 사건 승마장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 근방에는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1km 가량 떨어진 곳에서부터 끌어와야 하는데, 상수도를 설치하면서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과 설치비용이 과다하므로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이 이 사건 승마장 건축 허가 관련하여 2020년 허가사항 변경 신청 시 제출한 도면에 시 상수도 본관에 연결한다고 표시하였고, 그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상수도과에서 '상수도 인입 시 ... 별도 협의 완료 후 진행할 것'이라는 조건부 허가 회신을 받았다.
-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이 제한되므로 허가할 수 없다.

2. 관계법령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1]-5.-아., 제19조 제13호, 제22조 및 [별표2]-2.-바.
-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 제8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1.-가.-①

3. 이 사건의 판단

가. 고충민원 경위

-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여 있고, 최초 건축허가 당시(2013년) 및 현

재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이다.

- 신청인이 2013. 6. 26.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승마장 최초 건축허가 신청한 당시, 시행 중 이던 「(舊)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시행 2013. 4. 24.] [대통령령 제24502호, 2013. 4. 22. 타법개정] 제22조 및 [별표2]-2.-마.목(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2.-바.목)에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된바, 이 사건 토지는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원칙적으로는 건축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되고, 당시 상수도 공급 관련 협의가 없었음에도 2013. 7. 22. 이 사건 승마장 건축 허가 처리되었다.
- 이후 장기 미착공 상태였으나, 신청인이 2020. 12. 1. 이 사건 승마장 관련 건축면적 및 건폐율 등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때에야 상수도과와 상수도공급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고, 상수도과에서는 '상수도 인입 시 ... 별도 협의 완료 후 진행할 것'이라는 조건부 허가 회신을 하였고 2021. 2. 10. 변경 허가 되었다.
- 신청인은 그에 따라 이 사건 승마장 건축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골조 공사 완료 및 내부 마감 공사를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필수시설(편의시설)인 급수시설 확보를 위하여 상수도 설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상수도 시설이 없어 급수관 연결을 위해서는 타인 소유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고, 사유지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상수도 설치·연결 비용이 과다함에도 급수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승마장 준공이 불가한 상황이다.
-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면, 영농을 위한 경우이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대지 안에서의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만 가능하며, 이 사건 승마장 급수시설로는 상수도를 설치하라고 하였다.

나. 관련법령 검토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되나, 이 사건 승마장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1]-5.-아.목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이 사건 승마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외체육시설로,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 및 일정 규모의 부대시설을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4]-1.-가.-1)에 따라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필수시설로써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지하수법」 제7조 제1항),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40mm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다. 이 사건 고충민원 판단

- 시민호민관은 2022. 6. 17., 8. 29. 이 사건 승마장 공사 진행 정도 및 상수도 설치 가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충민원 현장을 방문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소통과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2022. 9. 15. 제10차 호민회의를 개최하였다.
- 행정관청은 신청인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신청이 향후 신청인의 목적 사업과 연관된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승마장 최초 건축허가 당시인 2013년에 피신청인(건축과)은 이 사건 토지가 상수도 미설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승마장 같이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급수시설이 필수시설임에도 상수도를 통한 용수 공급이 곤란하다면 지하수 이용이 가능한지 살펴야 할 것인데, 상수도 설치가 곤란함에도 지하수 개발 허용 여지를 전혀 두지 아니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에 수반되는 필수시설 간의 상관관계를 살피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로 보인다.
- 상수도 관망도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760m 가량 떨어진 거리의 ◎◎동 △△번지 인근에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 상수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동 산◇◇번지를 포함한 여러 토지를 지나야 하는데, ◎◎동 산◇◇번지는 382명의 공유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필지의 사유지를 지나야 하므로 사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이용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반대편인 ☆☆로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 상수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것도 이 사건 토지에서 1km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국·공유지 외에 사유지 여러 필지를 지나야 하므로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유자들에게 토지이용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서로 대립되는 경우, 양자는 모두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헌법상 동가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어느 원칙이 더 우선하는가는 적법 상태의 실현에 대한 공익과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신뢰보호이익과의 비교형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승마장 건축 허가는 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도 허가된 것으로 신뢰할 만한 피신청인의 공적견해표명이라 할 수 있고,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승마장 건축 공사를 진행하여 외형은 갖춰져 있고 내부 마감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신청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설치 가능한 실외체육시설인 이 사건 승마장과 그 부대시설을 건축한 것이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필수시설인 급수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준공이 불가하여 이 사건 승마장을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 시민호민관은 현장 확인 및 호민회의, 관련법령 조사, 신청인과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주장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바,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행정구현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9. 26.

4-2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부당 - 조정



1. 고충민원 개요

가. 신청요지

- 신청인은 시흥시 ◎◎동 산00번지에서 주택 증개축, 돈사 용도변경, 창고 개축 등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지 받았으나,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이고, 면적이 조금 늘어났을 뿐이고, 개축 등에 대한 것은 건축물 등이 오래되어 보수 및 수선한 것으로 추진 허가 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처리결과

시민호민관은 현장조사, 관련 법령 검토, 부서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 신청인은 선조(先祖) 대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 및 관리하여 왔음
- 위 건축물들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존재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되어 있던 건축물임
- 신청인이 위 건축물들을 증·개축한 부분은 10여 년 전 태풍 등으로 인하여 유지·보수 공사 필요에 의한 것임
- 신청인의 증·개축 행위 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해당 부분을 철거 후 허가를 받은 뒤 재건축하는 것은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낳음
-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와 당시 건축 등의 불가피한 정도, 철거 후 다시 설치하는 데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참고하여
- 돈사에서 창고로 용도변경 한 것은 원상복구 하고,
- 주택 증·개축과 돈사 개축 행위는 신청인이 이행강제금 납부를 완료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절차 이행 후 추진허가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 피신청인도 이를 인용하였기에 조정 결정함

2022. 3. 15.

4-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부당 - 조정



1. 고충민원 개요

가. 신청요지

- 신청인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차량에 대하여 총 4개의 유가보조금 카드를 소유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유시간과 비교하여 볼 때 사실상 물리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대상으로 보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고, 지난 요소수 대란 및 코로나19, 건강상태 악화 등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선처를 요청함

2. 처리결과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21. 11. 5. 04:03경(경상북도 영천시), 같은 날 04:26경(전라남도 장성군) 주유하면서 주유시간과 비교하여 볼 때 사실상 물리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1. 12. 2. 신청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대상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타당한 사유 등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12. 17.까지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서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과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또는 소명의 타당성이 없을 경우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할 예정임을 통지함
- 이에 신청인은 2021. 12. 8. 피신청인에게 '2021. 11월 초 요소수 대란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화물자동차 기사에게 구매 요청을 하였으나, 판매 중단으로 인해 다시금 신청인의 카드를 돌려받았는데, 이 때 위 기사의 카드(000, 인천00바0000)를 잘못 전해 받아서 카드가 서로 바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서로 모른 채 주유를 하게 된 것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실수를 인정하지만 6개월의 유가보조금 중단 처분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가혹한 처분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21. 12. 16. 시민호민관실에 고충민원을 접수하며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기간 단축을 요청함
- 피신청인은 2021. 12. 24. 신청인에게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 연속 주유(카드에 표기된 차량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 사용)로 부정수급한 행위'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및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 및 제9조의1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

정, 제27조 제3항 제7조 및 제28조 제1항 제6호, 제29조에 의거하여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환수 (22,520원)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2022. 1. 1. ~ 2022. 6. 30.) 행정처분을 함

- 그러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지급정지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한 지급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 한도라고 할 것이다(2021경기행심573 및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고).”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1) 신청인이 동종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 이 사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이 22,52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3)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 또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신청인이 2019. 9. 26. 간이식 수술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인 점, 5) 2021년 11월 당시, ‘요소수 대란’은 신청인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국가재난상황인 점, 6) 코로나 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지급정지 4개월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이에 피신청인도 인용하여 지급정지 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기에 조정 결정함

2022. 1. 28.



4-4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취소 요청 - 조정

1. 고충민원 개요

가. 신청요지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관련,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된 상태
- 건설기계사업(대여업, 매매업)을 위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사무실에 비치하였으나, 시청에서 현장 방문 시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천으로 잠시 덮어 났을 뿐이며,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업무처리가 가능함
- 현재 시정완료 한 상태이므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여 주길 바램

2. 처리결과

시민호민관은 관련 법령 검토, 사실 확인, 담당 부서에 민원 경위와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 14]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 3. 사무설비 -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통신시설 전원선 연결은 사무설비 요건이 아님
-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시 사무실 등록기준 구비 여부(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선(先) 확인하고 수리하여야 함
- 시에서 2022. 10. 12. 사무실 등록기준 구비 여부 확인 출장 시,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관련 사무실 등록기준 미충족 여부에 대하여도, 전원선이 연결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일반사회통념 상 거짓(허위)신고라고 보기 어려움
- 현재 신청인에 대하여 2022. 10. 18.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만 진행된 경우로, 의견제출 기한(2022. 11. 30.) 내인 2022. 11. 8.에 시정 완료함
- 시에서 2022. 10. 18. 신청인에게 발송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는 제5의2호 및 제6호가 미기재 되어 있음

위 사유들과 더불어 신청인이 2022. 11. 10.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취소하기로 조정결정함

2022. 11. 22.



4-5

사유지 현황도로 보상금액 확인 및 무단 포장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조정

1. 고충민원 개요

가. 신청요지

-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 ◎◎동 산00번지 토지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 소유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이 2022. 5. 위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2022. 9. 2. 위 토지 일부에 도로 포장을 각각 진행함
- 신청인은 2022. 10. 12. 시민호민관에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함

2. 처리결과

- 시민호민관은 현장조사, 관련 법령 검토, 호민회의 개최로 부서와 신청인의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 사유지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울타리 설치 및 도로 포장 진행 등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 또는 동의를 구함이 마땅함
 - 이 사건 토지는 1995년 이전부터 현황도로로 이용 중인 곳으로, 구간 노면에 다량의 포트홀이 발생하여 차량의 바퀴파손 등 영조물 배상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포장을 진행한 것이고, 안전 펜스(울타리)는 낡아서 시설물인 파이프 울타리 및 끈류 등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이 2022년 자진 철거됨에 따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신청인이 요청한 원상복구는 어려운 상황임
 - 이 사건 토지는 □□□□ 수변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로 수용·편입될 예정으로 보상시 시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포장하기 전인 비포장 상태로 감정평가 하도록 하고, 인근 잔여지에 대하여도 신청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상 진행할 것임
- 피신청인도 이를 인용하였기에 조정 결정함

2022. 11. 14.



고충민원 주요사례



고충민원 결정례

㉮ 농정분야

1. [조정] 경지정리지역 원상회복 이행 부당



5-1

경지정리지역 원상회복 이행 부당 - 조정

1. 고충민원 개요

- 신청인은 1977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 필지(◎◎동 000 답 4,736㎡, □□□ 경지정리 지역)에서 논농사를 영위하여 왔으나, 시(농업기술센터)에서 경기도 「경기미 쌀 적정생산 대책」 지침에 의해 논농사보다 수익 창출이 용이한 대체작물 경작을 권유하여, 2012년부터 해당 필지를 밭으로 변경하여 토마토 농사를 지어오고 있음
- 2020. 9월에 시(건축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2022.12 월 한)을 받았으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3억원을 부과 한다고 함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밭농사를 권장하면서, 건축과에서는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며, 인근지역 중 □□□에 대하여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공정함

2. 처리결과

- 시민호민관은 현장조사, 관련 법령 검토, 호민회의 개최로 부서와 신청인의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 피신청인(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국가에서 쌀 적정생산 대책 등으로 소득작물을 재배하도록 농민들에게 농업기술지도 차원에서 권장하였으며, 2016~2019년에 9필지 36,800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득작물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또한, 건축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 □□□ 경지정리지역 내 허가없이 형질변경 및 무단신축 행위는 불법이며, 해당부서에서는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2017년 당시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에 토지 현황에 따라 관계법령인 「개발제한구역법」 등에 따라 형질변경허가 신청 여부 확인 및 안내 등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간과하였고, 이에 시범사업을 이행한 신청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이므로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함.

- ① 신청인의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지원은 불가하다.
- ② 신청인의 적극적인 원상복구 의사 표명 및 피신청인의 원상복구 기한 연장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의견에 따라 원상복구 기한을 연장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1. 보도자료	72
2. 연혁	74
3. 역대 시민호민관 약력	76
4.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78
5.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86

어려운 법률문제 고민 말자 시흥시, 시민호민관 무료 법률상담 운영 '활발'

시흥시(시장 임병택) 시민호민관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사항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시는 변호사 18명, 법무사 8명, 세무사 3명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월·화요일은 생활 법률상담을, 수요일은 세무상담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시흥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은 신청인이 시흥시청 내 시민호민관을 방문해 법률상담관과 대면 또는 화상 방식으로 면담할 수 있다.

시민호민관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변호

사를 이용하면 된다. 동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우리동네 변호사는 방문 상담이 원칙이나, 코로나19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인·전화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상담 분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사·가사·형사 등 생활법률과 부동산 매매·등기·임대차 계약, 국세·지방세 등 세무 관계에 대한 사항 등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약 문의는 시흥시청 호민관실 내 법률상담실(031-310-2929)로 하면 된다.

담당부서 : 시민고충담당관 호민관지원팀 (031-310-2047, 2048)

· 시민호민관실 연혁

2012	10.05.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01.25. 민선7기 시민호민관의 역할과 과제 발표 03.04. 아동친화도시 조성 민관협의체 간담회 참석(아동 옴부즈퍼슨) 03.19. 시민호민관 고충민원 사례집(좌충우돌 행정극복기) 발간 04.02. 2018년 운영상황보고서 시의회 보고 05.02. 제3대 지영림 시민호민관 연임 07.14. 시민호민관 시민자문단 신규 및 재위촉 08.12.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부패방지권익위법 근거법령 마련 등) 08.26.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학술토론회 주제발표(지방옴부즈만 현안·확산 방안) 10.22. 지자체 고충민원 분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12.12.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평가 12.18. 지방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방문 컨설팅(6개 기관)
2013	01.09.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03.08. 제1대 임유 시민호민관 위촉 04.03. 시민호민관 사무실 개소 04.25. 시민자문단 위촉(1차)	2020	01.14.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AOA) 가입 신청 승인 03.17. 2019년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04.01. 2019년 운영상황보고서 시의회 보고 04.20. 시민호민관 전문조사관 채용 07.10. 개발제한구역 관련 논의를 위한 자문단회의 및 확대호민회의 개최 08.08. 시민무료법률상담관 임기만료에 따른 위촉(신규위촉 3명, 재위촉 13명) 09.24. 지자체 고충민원 분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10.15. 공공서비스 혁신평가 자문 11.24.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심사 12.14. 시민호민관 시민자문단 신규 및 재위촉(신규위촉 3명, 재위촉 5명)
2014	04.01. 2013년 운영상황 보고서 시의회 보고 04.23. “발로 뛰고 귀로 듣는 시민호민관실” 운영(~2014.09.03.) 05.08.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호민관의 의회출석 규정 마련) 08.08. 시민무료법률상담관 위촉(변호사 7명, 법무사 7명)	2021	02.08.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적극행정 면책조항 신설) 02.10.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02.26.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05.12. 시민호민관 고충민원사례집 영문번역본 발간 06.14. 제5대 백종은 시민호민관 위촉 06.28. 시민호민관 운영매뉴얼 발간 07.14. 시민호민관 시민자문단 위촉 및 해촉 10.07. 시민호민관 시민자문단 (비대면)회의 개최 12.16.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달리는 국민신문고 개최
2015	03.04. 2014년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03.09. 제2대 유상진 시민호민관 위촉 03.31. 2014년 운영상황보고서 시 집행부 및 시의회 보고	2022	02.01. 시민무료법률상담관 위촉(우리동네 변호사 업무 이관 및 세무분야 상담관 추가) 02.25. 2021년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04.21. 시민호민관 시민자문단 (비대면)회의 개최 08.10.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국민권익위 의견 반영)
2016	02.26. 2016년 국민권익의 날 유공자 포상(국무총리 표창) 04.28. “발로 뛰고 귀로 듣는 시민호민관” 운영(~2016.09.28.) 10.31. 배심법정 운영 11.14.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 참석(태국) 11.14.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회원가입 결정		
2017	03.31. 2016년 운영상황보고서 시 집행부 및 시의회 보고 05.02. 제3대 지영림 시민호민관 위촉 05.16. 제15차 AOA 총회 및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참석 07.14. 시민호민관 시민자문단 신규위촉(12명) 12.28. 좋은정책 페스티벌 모범정책상 수상		
2018	05.14. 시흥시 시민호민관 도입 5주년 기념 집담회 개최 07.17. 지영림 시민호민관 규제개혁 유공 국민포장 수상 08.08. 시민무료법률상담관 임기만료에 따른 위촉(신규위촉1, 재위촉 12) 12.20. 시민자문단 신규 위원 위촉		

· 역대 시민호민관 약력



1대

임 유

재직기간

2013. 3. 8. ~ 2015. 3. 7.

주요경력

- 1990. 2.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02. 9. ~ 2004. 9.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홍보 및 제도개선)
- 2004. 12. ~ 2007. 12.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
- 2010. 11. ~ 2011. 12. 미주헤럴드경제 대표
- 그 외
한일리스금융 근무(1990~2000)
전국리스노조협의회 의장(1995~1997)
(주)이텍스트코리아 대표(2001~2002)
USC 객원연구원(2008~2009)
글든브릿지증권 미주법인장(2009~2010)
(주)케이알이앤씨 대표(2012~2013.2)



3-4대

지영림

재직기간

2017. 5. 2. ~ 2021. 5. 1.

주요경력

- 1986. 2.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9. 8.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1995. 2.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1994. 6. ~ 2011. 9. 국민권익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
- 2011. 9. ~ 2016. 9.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 2015. 3. ~ 2017. 2.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2017. 9.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그 외
국민권익위원장 표창(2021. 2.)
경기도청 옴부즈만(2021. 5.)



2대

유상진

재직기간

2015. 3. 9. ~ 2017. 3. 8.

주요경력

- 1992. 3. ~ 1997. 2.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1997. 2. ~ 2001. 6. 한국개발연구원(주임연구원)
- 2012. 3. ~ 2014. 1. 사법연수원
- 2014. 7. ~ 2015. 3. 경기도청 행정심판위원회 전문요원
- 2016. 3.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대

백종은

재직기간

2021. 6. 14. ~ 현재

주요경력

- 1984. 1. 서울특별시 9급 공무원 임용
- 1988. 2.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12. 1. ~ 2015.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과장
- 2015. 7. ~ 2016.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발전기획단장
- 2016. 7. ~ 2017.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건설국장
- 2017. 6. 서울특별시 명예퇴직(지방부이사관)
- 2017. 7. ~ 2021.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사실장(개방형사무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 10.]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155호, 2022. 8.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시흥시 시민호민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는 참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12, 2021. 2. 8, 2022. 8. 10>

1. “민원인”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민원 중 시민호민관이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5. “시민편익 지원사무”란 시민에게 행정·법률·세무 등 각종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등을 통해 시민의 편익을 지원하는 사무를 말한다.
6. “시민호민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며 대표 ombudsman을 말한다.

제2장 시민호민관 <개정 2019. 8. 12>

제3조(시민호민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참여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호민관(이하 “호민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2>

② 호민관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③ 호민관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흥시 호민관선정위원회가 선정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8. 10>

1.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호민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시민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위원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흥시 호민관선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호민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흥시 호민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호민관의 선정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혹은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2. 12,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 각 1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호민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8. 10]

제5조(직무의 독립성) 호민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시는 호민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보수 등) ① 호민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19. 8. 12>

② 호민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4호 임기제공무원 연봉 하한액 및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9. 8. 12>

제7조(직무와 권한) ① 호민관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8>

1. 시민이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권익침해 사안의 채택·조사
 3.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4. 부패 및 불공정 유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6. 호민관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7.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과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8. 자문단 운영 및 정책사항 총괄
 9. 민원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0. 시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시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12. 권익구제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3.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4. 권익구제 활동과 관련된 자문·교육·평가
 15.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6. 그 밖에 권익구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호민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4. 호민관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수사 및 감사 중이거나 이에 따라 종결 처분된 사항
 6.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7.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8.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9.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접수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10. 국가사무 및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11.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1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13. 호민관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14. 호민관 본인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는 사항
- ③ 호민관은 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조사·처리 과정

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직무 관할) 호민관이 제7조의 직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시 소속기관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9조(해촉) 시장은 호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1. 본인이 사임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1조의 겸직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5. 제10조의 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0조(책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호민관은 시민의 권익 보호자로서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호민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해촉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겸직 등의 금지) ① 호민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호민관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시민은 호민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고충민원의 신청절차)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호민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과 그 밖의 단체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고충민원의 신청목적 및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원인 또는 사실이 있었던 일시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충민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등) ① 호민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가 고충민원 신청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3. 삭제<2022. 8. 10>
4. 거짓이거나 고충민원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③ 호민관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제15조(시의의 통보) ① 호민관은 접수된 고충민원 또는 권익침해 사안(이하 “고충사항”이라 한다)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8>

② 호민관은 고충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 또는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합의의 권고 및 조정) ① 호민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호민관은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합의의 권고 및 조정과 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12]

제17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호민관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호민관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8. 10]

제17조의2(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호민관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0]

제18조(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존중) 시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중전 제17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18조의2(적극행정 면책)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권의

위법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따라 조치한 경우와 이 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시민호민관의 조정·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시흥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 감사 시에 면책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본조신설 2021. 2. 8]

제19조(조치결과 등 요구) ① 호민관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때에는 시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와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요구받은 시는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호민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0>

[중전 제18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시민은 호민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고충민원 조치결과 통지) 호민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에서 통보받은 고충민원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중전 제19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21조(공표) ① 호민관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과 제20조에 따른 통보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② 호민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중전 제20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4장 호민관에 대한 협조·지원

제22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호민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공무원)을 두며, 호민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8. 10>

[중전 제21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23조(인력·예산지원) 시장은 호민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중전 제22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24조(운영상황의 보고 등) ① 호민관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호민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호민관은 호민관에 관한 사무와 예산지원 등에 있어 시의회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호민관의 직무와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5. 8]

[중전 제23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25조(포상) 시장은 시의 발전에 기여한 호민관 및 자문단의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중전 제24조에서 이동 2019. 8. 12]

제5장 삭제<2019. 8. 12>

제26조(적용규정) 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상이하게 된 경우에는 본 조례의 각 규정의 내용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시행일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1. 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8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2 조례 제1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임용된 호민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2. 8 조례 제1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0 조례 제2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8. 10.] [경기도시흥시규칙 제990호, 2022. 8.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제2장 시민호민관

제2조 삭제〈2019. 8. 12〉

제3조(위촉장 교부) 시장은 시민호민관(이하 “호민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① 호민관은 직무와 관련하여「형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호민관은「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제5조(이해관계에 있는 기업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시민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시민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혹은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단장은 호민관이 된다.

③ 위원은 행정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호민관이 위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⑤ 자문단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다.〈신설 2019. 8. 12〉

제7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능으로 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자문

2. 운영상황보고서(안) 검토

3. 그 밖에 호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 등

제8조(소자문단) ① 호민관은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호민관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① 단장은 제6조와 제8조에 따른 자문단 등에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0조(고충민원신청서 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르며 호민관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사항처리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처리 관련 기록물의 관리 및 보관은「시흥시 기록관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호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된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 전부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호민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12〉

제12조 삭제〈2022. 8. 10〉

제13조(신청서의 보완) ① 호민관은 고충민원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호민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호민관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

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호민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충민원 취하서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제15조(신청인의 의무)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호민관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할 경우 고충민원의 신청인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진술하고 적절한 증거를 제시 할 협력의무를 갖는다.

② 고충민원 신청인이 제1항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호민관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만큼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제17조(고충민원조사 제외 등 통지)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제외통지서를, 고충민원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지연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제18조(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호민관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호민관은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실시의 통보)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해당부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신분증의 휴대 등) ① 호민관이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발급대장을 비치·등재하여야 하며, 호민관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고충민원조사결과와 통보)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제22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호민관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8. 12〉

② 호민관은 조례 제16조제2항의 조정을 위하여 호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제23조(권고, 의견표명) 조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고충민원처리서(권고·의견표명)로 통보한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제24조(권고, 의견표명의 재심의) 시는 조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

명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호민관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이 경우 호민관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제25조(시정 등 조치의 통보)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결과와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권고(의견표명)조치(검토)결과통보서에 따른다.〈개정 2019. 8. 12〉

② 호민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결과 조치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한다.

③ 시는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결과 통보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호민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22. 8. 10〉

제26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① 호민관은 조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되는 시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호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 및 소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권고, 의견표명 등의 공표) 조례 제21조에 따른 권고, 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의 공표는 공고에 따른다.〈개정 2019. 8. 12〉

제4장 호민관에 대한 협조·지원

제28조(사무기구 운영 등)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1.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 및 인원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다.
2. 사무기구 직원은 호민관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29조(전문조사관 채용 등) 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전문조사관은 3명 이내로 하되 호민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보고 또는 해당분야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조사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② 전문조사관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개정 2019. 8. 12, 2022. 8. 10〉

[제목개정 2022. 8. 10]

제30조(공인의 사용) ① 호민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위촉장, 통보서 등에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민관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시흥시 공인 조례」 및 「시흥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자문단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운영상황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호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2 규칙 제9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자문단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시민자문단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 8. 10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보고서

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봅니다

발행일 2023년 2월 인쇄
2023년 2월 발행

발행처 시흥시 시민호민관

편집위원 시민호민관

주소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시흥시청 본관 1층 시민호민관실

전화 031-310-2046~9

팩스 031-380-5303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hominkwan/>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